

動力資源部告示 (第81-200号)

石油事業法対象品目에 대한 輸入要領

石油事業法 第17조 및
輸出入期別公告 総則 第3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石油事業法対象品目에 대
한 수입요령을 다음과 같
이 告示한다.

1981年 7月 14日
動力資源部 長官

附 則

1. 이 告示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告示 시행 이전에 종전
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조치는
이 告示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動力資源部告示 第80-178
号 (80.12.31)는 이를 폐지한다.

4. 이 告示는 별도 변경이 없
는限 移越 적용한다.*

(別表)

CCCN	品 目	輸入要領
2709	石油 및 역청유(原油 에 한한다) 1. 石油 2. 역청유	動力資源部長官의 추천 을 받아 수입할 수 있 음.
01	01-11	大韓石油協會長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2	00	다면, 국내에 도입되지 아니하는 海外벙커링 연 료유는 수입자동 승인임
01	99	1. 휘발유 및 그 조제품 가. 自動車 휘발유 나. 항공휘발유 다. 제트油 라. 기 타 ①나프타 ②기 타
02	00	2. 燈油 및 그 조제품 가. 燈油 ①제트燃料油 ②기 타
04	00	나. 기 타
05	00	*백 정 *기 타
06	01	3. 軽 油
	99	4. 重 油 가. 렁커C油 나. 기 타
07	01	其 他
	99	1. 다음의 것은 大韓石 油協會長의 추천을 받 아 수입할 수 있음. ①윤활유기유중 파라 핀계기유로서 40°C에 서 동점도(cst)가 24 이상 650미만이고 점 도지수(VI)가 70이 상의 것. 2. 기타의 것은 수입 자 동 승인품목임.
08	00	
09	01	
	99	
11	99	

1. 輸入対象品目

石油事業法 第2조에 의한 石油
및 石油製品으로서 別表에 기재
되어 있는 品目.

2. 輸入節次

別表에 기재된 輸入要領에 따르
되 무역거래법 제10조에 의한
구비서류중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①수입추천신청서 3부
- ②오퍼 또는 이에準하는 서류
- ③신청사유 및 용도설명서 1부
- ④其他 참고서류
(但, 原油는 ①, ②号에 限
함)

3. 輸入추천對象者

①原油는 石油類精製業체 및 產
油國정부, 또는 產油國정부의 原
油판매를 대행하는 기관과 직접
原油공급계약을 체결한 者에 限
함.

②윤활유 基油는 윤활유基油
또는 윤활유의 제조시설 보유자에
限함.

③燃料油는 석유류업체, 韓國石油開發公社 또는 大需要処
에 限함.

2711		石油가스기타 가스상 탄화수소			1. 技術導入契約 가. 原材料 및 部品을 기술제공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者로부터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나. 기술제공자가 제공한 技術(이하 “契約기술”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제조한 製品(이하 “契約제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 다만 輸出地域制限의 경우로서 다음 각号의 1에 해당하는 때는 例外로 한다. ① 技術提供者가 기술도입자의 輸出을 제한하는 지역(이하 “제한地域”이라 한다)에서 이미 계약 기술을 등록하고 있는 경우. ② 技術提供者가 제한지역에서 계약제품에 대해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③ 技術提供者가 제한 지역을 第3者의 独占的 판매지역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
	02	01	1. 액화가스상의 탄화수소 가. 메탄	1. 大韓石油協회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다만 다음의 것은 수입자동 승인품목임. ①天然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1. 大韓石油協회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다만 다음의 것은 수입자동 승인품목임. ①등산버너用cartridge에 충전된 가스(포장단위500gr 미만 분에 한함)	
	01	01	나. 프로판		
2714		石油아스팔트, 石油 코크스 기타의 石油 또는 역청유의 잔유물		2. 다만 다음의 것은 수입자동 승인품목임. ①등산버너用cartridge에 충전된 가스(포장단위500gr 미만 분에 한함)	
	01	00	1. 石油코크스	1. 다음 것은 大韓石油協회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石油아스팔트	
2716	02	01	2. 石油아스팔트	2. 기타의 것은 수입자동승인품목임.	
		2	*윤활유溶劑의 정제부산물(유동점35℃)		
		99	*기타		
			마스켓, 컷백기타의 역청질 훈합물.		
	01	00	*컷 백	1. 다음 것은 大韓石油協회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아스팔트, 역청, 타르 또는 피치유제	
	03	00	*아스팔트, 역청, 타르 또는 피치유제	2. 기타의 것은 수입자동승인품목임.	
	04	00	*기타		

經濟企劃院

告示 (第50号)

國際契約上의 不當한
共同行為 및 不公正去
來行為의 범위 및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國際契
約에 있어서 부당한 共同
行為 및 不公正去來行為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告示한다.

1981年 7月 15日

經濟企劃院 長官

- 1. 技術導入契約
가. 原材料 및 部品을 기술제공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者로부터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나. 기술제공자가 제공한 技術(이하 “契約기술”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제조한 製品(이하 “契約제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 다만 輸出地域制限의 경우로서 다음 각号의 1에 해당하는 때는 例外로 한다.
① 技術提供者가 기술도입자의 輸出을 제한하는 지역(이하 “제한地域”이라 한다)에서 이미 계약 기술을 등록하고 있는 경우.
② 技術提供者가 제한지역에서 계약제품에 대해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③ 技術提供者가 제한 지역을 第3者의 独占的 판매지역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
- 다. 契約제품에 관하여 기술도입자의 판매창구, 판매수량 또는 판매가격 (“재판매가격”을 포함한다)을 제한하는 경우.
다만, 기술제공자가 “나”号의 輸出地域에 대하여 기술도입자의 수출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 라. 競爭的 製品의 취급이나 競爭的 技術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 마. 契約 당사자의 호혜적인義務 없이 기술도입자만이 기술제공자에게 계약기간중에 개발된改良技術을 일방적으로 제공 또는 보고하게 하는 경우.
- 바. 契約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기술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 사. 기술도입자가 도입한 工業所有權 이외의 기술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후에 이미 제공한 기술자료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계속적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

아. 技術導入者에게 국제계약 관례상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不當한 구속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2. 合作投資契約

가. 原材料 및 部品등을 外國投資家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나. 合作投資会社가 제조한 제품을 外國投資家 또는 그가 지정하는 者를 통해 수출하도록 하는 경우. 다만, 外國投資家 또는 그가 지정하는 者가 適期에 국제적으로 타당한 가격 및 条件으로 인수할 의무를 지는 때에는例外로 한다.

다. 外國投資家가 선임할 수 있는 理事數의 비율이 外國投資家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라. 内外國投資家의 투자비율이同一할 경우, 理事会의 결의가 可否同数인 경우에 外國投資家가 선임한理事가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경우.

마. 계약당사자간에 紛爭이 발생할 경우에 外國投資家의 国内法을 해석 기준으로 적용하게 하거나 内국投資家에게 불리한 중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바. 内국投資家에게 국제 계약 관례상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不當한 구속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3. 借款契約

가. 元利金을 상환할 때마다貸主가 상환통화를 선택하게 하는 경우.

나. 상환기간을 정하면서 借主의 귀책사유없이 임의로 先償還을 요구하는 경우.

다. 借主에게 부당하게 物資供給者를 지정하는 경우.

라. 借主에게 국제계약관례상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不當한 구속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4. 輸入代理店契約(長期輸入契約)

가. 輸入代理店業者가 계약상 대방인 외국사업자로부터 수입하는 製品(이하 “契約製品”이라 한다)의 部品등을 당해 외국사업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나. 契約製品의 재판매창구, 재판매가격 또는 재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경우.

다. 契約製品과 경쟁적인 제품의 취급을 제한하는 경우.

라. 輸入代理店業者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外國事業者 이외의 者로부터 계약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마. 輸入代理店業者에게 국제계약관례상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한 구속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5. 長期輸入契約

長期輸入契約에 있어서의 부당한共同行為 및 不公正去來 행위의 범위 및 기준은 수입대리점계약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附 則

(시행일) 이告示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1年度 下半期 및 1982
年度 上半期 輸出入期別公
告 總則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動力資源部
長官의 수출추천 품목에
대한 수출추천요령을 다
음과 같이 公告한다.

1981年 7月 14日

動力資源部 長官

1. 추천대상품목

CCCN	추천대상품목
2709	石油 및 역청유(原油에 한 한다.)
2710	1. 부분정제한石油 (TOC 포함) 2. 휘발유 (Gasoline, Naphtha) 3. 燈油(Kerosene) 4. 車油(Diesel) 5. 重油(輕質, 中質, 重質) 조유(Residual Fuel Oil) 6. 제트油
2711	1. 프로판 2. 부탄

2. 추천대상자 : 精油会社

3. 추천범위 및 基準

가. 国内需給上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나. 輸出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비서류

가. 수출허가(승인) 신청서 3부

나.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다. 사유서 1부.

附 則

1. 이要領은 公告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要領은 별도 변경이 없는限 移越 적용한다.

動力資源部 公告

(第81-19号)

石油類輸出 추천要領